

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(김태희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f-64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1. 5. .

발 의 자 : 김태희 의원 외 12명

1. 개정이유

-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표준안과 현실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이후, 본회의장 임시 의석배정순서는 현실을 반영하여 조정함.(안 제3조)
- 전반기 의장단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고, 후반기 의장단 선거는 전반기 의장단 임기만료일에 실시하는 등 의장단 선출시기를 명확히 함.(안 제7조)
-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여 전반기 의장·부의장의 임기를 명확히 함.(안 제8조)
- 임시의장의 선거 사유에서 궐위된 경우를 제외하고, 임시의장 직무대행 기간은 선출된 때부터 의장 등이 직무수행 의사를 표시 한때까지로 명시함.(안 제9조)
- 비공개회의 동의 안전에 대하여는 토론과정에서 정보가 누설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함.(안 제15조의2 신설)
- ‘기금운용계획변경안’ 이 추가경정예산안 진행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여 조문의 명확성을 확보함. (안 제75조)

○ 시정질문 요지서 송부시간 72시간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함.(안 제77조)

3. 개정규칙안 및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1

4. 예산수반사항 : 붙임 2 ※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5. 현행규칙 : 붙임 3

6. 관계법령 : 붙임 4

7. 입법예고 결과 : 의견없음

8. 부서의견 조회 : 붙임 5

[붙임 1]

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지방의회의원 총선거(이하 “총선거”라 한다)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다음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.

1. 지역구의원은 다선, 연장자 순
2. 비례대표의원은 연장자 순

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“제2항”부터 “제5항”까지를 “제3항”부터 “제6항”으로 한다.

②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의 집회일에 실시하며,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 만료일에 실시한다. 다만, 그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된 때에는”을 “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. 다만, 그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경우에는”으로 한다.

제9조 본문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(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)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.
- ②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.

③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 및 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.

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법 제65조에 따른 비공개회의를 발의한 경우 해당 안건은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.
- ②의장이 비공개회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야 한다.

제63조의 제목 “(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)” 을 “(타 위원회 소속 의원의 발언 청취)” 로 하고, 같은 조 내용 중 “위원 아닌 의원” 을 “소속위원이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” 으로 한다.

제71조제1항 중 “소관국장” 을 “소관 실·국장” 으로 한다.

제75조 본문 중 “기금운용계획안 및” 을 “기금운용계획안, 기금운용계획변경안,” 으로 하고 “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제71조부터 74조” 를 “제71조부터 제74조” 로 한다.

제77조제5항 중 “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” 를 “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(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)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소 속		안산시의회
입 안 자	시의원	김태희 의원 대표발의 (행정번호 3577)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의석배정) ①(생략)</p> <p>②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출신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.</p>	<p>제3조(의석배정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지방의회의원 총선거(이하 “총선거”라 한다)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다음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.</p> <p>1. 지역구 의원은 다선, 연장자 순</p> <p>2. 비례대표 의원은 연장자 순</p>
<p>제7조(의장·부의장의 선거) ①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.</p> <p><신설></p>	<p>제7조(의장·부의장의 선거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의 집회일에 실시하며,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 만료일에 실시한다. 다만, 그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.</p>
<p>②~⑤(생략)</p>	<p>③~⑥(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)</p>
<p>제8조(의장·부의장의 임기) ①(생략)</p> <p>②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.</p>	<p>제8조(의장·부의장의 임기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. 다만, 그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경우에는 -----.</p>
<p>제9조(임시의장의 선거)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·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.</p>	<p>제9조(임시의장의 선거) ①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(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)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.</p> <p>②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.</p> <p>③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 및 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5조(회의에 관한 선포)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제63조(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)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<u>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</u> 들을 수 있다.</p> <p>제71조(예산안·결산의 회부 및 심사) ①의회에 예산안과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. 이 경우 본예산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시장의 시정연설과 <u>소관국장의 취지설명</u>을,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<u>소관국장</u>으로부터 취지 설명을 듣는다.</p> <p>②~③(생략)</p> <p>제75조(기금운용계획안 등) <u>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의 결산에 대해서는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제71조부터 7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</u></p> <p>제77조(시정에 관한 질문) ①~④(생략)</p> <p>⑤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내용 등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의장은 <u>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</u> 질문요지서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하고, 시장은 서면 답변서를 답변시간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⑥(생략)</p>	<p>제15조(회의에 관한 선포)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5조의2(회의의 비공개) ①법 제65조에 따라 비공개회의를 발의한 경우 해당 안건은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.</p> <p>②의장은 비공개회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야 한다.</p> <p>제63조(타 위원회 소속 의원의 발언청취) --- - <u>소속위원이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</u> -----.</p> <p>제71조(예산안·결산의 회부 및 심사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소관 실·국장</u> ----- ----- <u>소관 실·국장</u> ----- -----.</p> <p>②~③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5조(기금운용계획안 등) <u>기금운용계획안, 기금운용계획변경안, -----제71조부터 제74조-----.</u></p> <p>제77조(시정에 관한 질문) ①~④(현행과 같음)</p> <p>⑤----- ----- ----- <u>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(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)</u> ----- -----.</p> <p>⑥(현행과 같음)</p>